

〈논 문〉

## 괴테(J. W. von Goethe)의 法思想 —라드브루흐 法哲學의 괴테 受容—

崔 鍾 庫\*

### 서 론

정확하고 골고른 정보가 결핍된 우리나라에 문학가로서만 알려져 있는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는 법률가로서도 뛰어난 인물이다.<sup>1)</sup> 본 논문은 법사상가로서의 괴테를 분석함으로써 거인 괴테의 바른 면모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sup>2)</sup> 괴테연구가 면면히 광범하게 이루어지면서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의 이른바 ‘괴테-르네상스’(Goethe- Renaissance) 이후<sup>3)</sup> 독일에서 이루어진 괴테에 대한 법학적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sup>4)</sup> 특히 20세기 최대의 법철학자 구스타브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1878-1949)를 통하여 재발견 내지 재해석된 괴테의 법사상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 조명하려 한다.

---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教授

1) 괴테의 법률가로서의 생애에 관하여는 따로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독일문헌으로는 Afons Pausch/Jutta Pausch, *Goethes Juristenlaufbahn*, Köln, 1996이 있다.

2) 국내 법학계에서 괴테에 대한 관심은 이항녕, 괴테와 라드브루흐(수필), **법조춘추** 10호, 1974년 1월호, 22-23면; 안경환, 괴테의 「파우스트」, **법과 문학 사이**, 까치, 1995, 225-228면; 최종고, **G. 라드브루흐연구**, 박영사, 1995 중 특히 ‘라드브루흐에 있어서 법과 시’ 부분, 329-361면.

3) 1982년 괴테서거 150주년에는 서독 대통령이 바이마르의 괴테기념관에 화환을 바쳤고, 1990년 통일 이후에 독일정부는 이 도시를 통합유럽의 문화중심 도시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마르 Goethe-Gesellschaft의 회원수는 36개국에 4500여 명이고, 독일에만 45개 지부에 8000명의 회원이 있다. 김종대, 괴테의 세계문학과 그 현대적 의의, **문학예술**, 1996년 겨울호, 74-78면.

4) 이에 관한 문헌은 Klaus Lüderssen(Hrsg.), *Die wahre Liberalität ist Anerkennung: Goethe und die Jurisprudenz*, Baden-Baden, 1999, SS. 351-368에 실린 Thorsten Schweizer가 만든 Bibliographie가 가장 최신이며 완전하다.

라드브루흐는 그의 주저 『법철학』(*Rechtsphilosophie*, 1932)에서 괴테를 24군데에서나 인용하고 있고, 29개의 장(章)의 첫 머리에 쓴 못토적 인용문 가운데 9개를 괴테의 것으로 장식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르면 라드브루흐는 괴테를 1916년까지 주로 연구하였고, 그의 공직생활 이후 1933년 나치스집권 이후부터 다시 많이 언급하고 있다.<sup>5)</sup> 라드브루흐는 『괴테와 법』(*Goethe und das Recht*), 『베를름 마이스터의 사회·정치적 사명』(*Wilhelm Meisters sozial-politische Sendung*) 등 논문들을 발표하였고, 하이델베르크대학 도서관에 있는 그의 유품(Nachlaß)에는 발표되지 않은 괴테에 대한 강연원고들도 남아 있다.<sup>6)</sup> 라드브루흐의 제자로서 가장 충실한 대변자였던 에릭 볼프(Erik Wolf) 교수도 “괴테의 격언 속에 포함된 교훈은 라드브루흐의 학문적 사상에 전 생애를 통하여 정당성의 근거를 주었고, 이것을 인도하고 또한 한정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sup>7)</sup>

### I. 방법3원주의(Methodentrialeismus)

철학과 법철학에서 존재(Sein)와 당위(Sein)는 결국 하나라고 보는 태도를 방법일원주의(Methodenmonismus)라 하고, 존재와 당위는 별도의 성질이라고 분리하는 입장을 방법이원주의(Methodendualismus)라 부른다. 라드브루흐는 처음에는 신칸트주의(Neo-Kantianismus)의 입장에서 방법이원주의를 취하였다가 만년에 이를수록 사물의 본성(Natur der Sache)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존재와 당위 사이의 긴장을 완화(Entspannung)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을 학자들은 존재와 당위 사이에 있는 의미(Sinn)의 영역, 즉 문화의 세계를 강조한 방법3원주의(Methodentrialeismus)적 태도라고 해석한다.<sup>8)</sup> 이것은 자연(Natur)과 이상

5) Berthold Kastner, *Goethe in Leben und Werk Gustav Radbruchs*, Heidelberg, 1999; *G. Radbruch Gesamtausgabe*, Bd. 5, Heidelberg, 1997에 실린 Goethe에 관한 글을 제목만 보면; *Goethes Straßburger Promotions-Thesen*, Wilhelm Meisters Sozial-Politische Sendung(SS. 164-173), *Wilhelm Meisters sozialistische Sendung*(SS. 174-175), *Goethe-Soziologie*(SS. 196-198), *Il diritto nella visione goethiana del mondo*(SS. 199-207), *Ruine, Rekonstruktion oder Neubau(Goethe-Haus)? Rezension zu: Goethe in unserem Leben*(SS. 210-212), *Ein Menschenleben: Goethe*(SS. 213-216)이다.

6) 자세히는 최종고, G. 라드브루흐연구, 박영사, 1995, 111-138면

7) 에릭 볼프/최종고 역, 라드브루흐의 생애와 사상; 라드브루흐/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2000(년판), 308면.

8) Jisu Kim, *Methodentrialeismus und Natur der Sache im Denken Gustav*

(Ideal), 문화와 종교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적 시각인데, 라드브루흐는 칸트와 관련하면서도 괴테에게서 많은 시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괴테의 “스스로 법[바름] 속으로 생각하기”(Sich ins Recht denken)라는 표현을 “빛나는 말씀”(ein herrliches Wort)이라 지적하면서 라드브루흐는 법철학에서 이 개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였다.<sup>9)</sup> 괴테는 이런 표현을 썼다.

모든 낮과 모든 밤  
나는 인간을 찬양하노니  
영원히 법[바름] 속으로 생각하는  
그는 영원히 아름답고 위대하다.  
(Alle Tag' und alle Nacht/ Rühm ich so des Menschen Los,  
Denkt er ewig sich ins Rechte/ Ist er ewig schön und groß.)<sup>10)</sup>

또 다른 시에서 이렇게도 표현하였다.

법[바름]이 당신에게 들어가도록  
신(神) 속에서 법적인 것[바른 것]을 느끼도록 하라.  
(Soll das Rechte zu Dir ein  
Fühl' in Gott was Rechts zu sein.)<sup>11)</sup>

괴테는 근본적으로 존재와 당위의 연결을 신뢰하였다. 그것은 칸트와 근본적으로 달랐고, 괴테의 자연과학적 탐구정신과도 관련이 있었다. 괴테는 스피노자(Spinoza)의 영향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술가이지 결코 이론적 철학자는 아니었다.<sup>12)</sup> 괴테는 “철학에 대하여 나는 항상 자유로웠다. 건전한 인간이성의 관

Radbruchs, Freiburg Diss. 1966.

9) G. Radbruch, Brief an Erik Wolf vom 29. 8. 1941, Erik Wolf가 Adalbert Stifter에 관한 연구서에서 이 말을 먼저 썼는데, Wolf는 Stifter 자신도 이 말을 쓰지 않았다고 Radbruch에게 편지하였다(13. 9. 1941).

10) Goethe, Schwebender Genius über den Erdkugel, in: FA[Frankfurter Ausgabe] Bd. 2, S. 690, Z. 9f.

11) Goethe, Divan, Buch der Betrachtungen, Gedicht, Märkte reizen dich zum Kauf..., V. 9f, in: FA Bd. 3/1, S. 343; MA[Münchener Ausgabe] Bd. 11, 1, 2, S. 41, HA[Hamburger Ausgabe] Bd. II. S. 37.

12) Georg Jellinek, Die Beziehungen Goethes zu Spinoza, Schriften Bd. I, 1911, S. 278.

점이야말로 나의 것이었다”고 에커만(Eckermann)에게 토로했다.<sup>13)</sup> 그리고 “나는 철학은 종교와 시속에 포함되어 있지 독립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시와 진실』에 적었다.<sup>14)</sup> 괴테는 뉴턴(Newton)과 반대로 자연 속에서 이론을 수립하려는 것을 반대하였다. 라드브루흐는 『법철학』에서 괴테가 에커만에게 한 말, “인간은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문제가 출발하는 곳을 탐구하고 자신을 이해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서게 하려고 태어났다”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상대주의는 괴테라는 위대한 이름에 소환된다. 1811년 1월 22일 괴테는 『철학적 체계의 비교역사』를 읽고 라인하르트(Reinhard)에게 편지를 썼다. “이 저서를 읽고 나는 새로운 사실, 저자가 매우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즉 인간의 思惟방법의 차이는 인간의 차이에 기인하고, 그래서 전혀 같은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때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조용해지고, 타인에 대하여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괴테의 상대주의가 빌라도의 회의주의가 아니라 나탄(Nathan)의 불가지론에 유사하다는 것은 그의 아름다운 『운순한 크세니엔』(Zahme Xenien)이 증명하여 준다.

만일 내가 주의 길을 안다면  
진실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으리다.  
만일 내가 眞理의 집으로 인도된다면  
神이여! 다시는 그 집에서 나오지 않으리다.<sup>15)</sup>

라드브루흐는 또 “매우 많은 모순이 들끓는 곳, 그 곳을 나는 즐겨 배회하고 싶다. 길을 잃는 —그 유쾌함!— 권리를 누구에게도 할애할 수 없다”는 괴테의 표현도 인용하고 있다.<sup>16)</sup> 라드브루흐는 법철학을 가장 특징지우는 상대주의를 빌라도적 회의주의가 아니라 나탄적 불가지론에 가까운 괴테적 이해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는 자신이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실천적 상대주의를 뜻하는 것이었다.

13) Eckermann, Gespräch mit Goethe vom 4. 2. 1829, in: MA Bd. 19. S. 278.

14) Goethe, *Dichtung und Wahrheit*, in: FA Bd. 14, S. 243.

15) 라드브루흐/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2000, 44면.

16) 라드브루흐/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2000, 45면.

## II. 사물의 본성(Natur der Sache)

라드브루흐 뿐만 아니라 카우프만(Arthur Kaufmann), 코잉(Helmut Coing), 마이호퍼(W. Maihofer) 등 현대 법철학자들에게서 사물의 본성(Natur der Sache)의 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up>17)</sup> 나치즘을 경험하고 난 라드브루흐는 ‘사물의 본성’을 모든 법철학의 기초가 되는 사고형식(Denkform)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념의 소재규정성’(Stoffbestimmtheit der Idee)이라는 표현도 즐겨 사용하였다. 그의 『법철학』에는 마치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보면 그의 머리 속에 다비드상이 그려져 있었고, 그 이념이 대리석이란 소재를 통해 나타날 때 비로소 작품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8)</sup> 라드브루흐는 사물의 본성이라는 개념을 그의 위대한 두 스승 칸트와 괴테 사이에서 얻었는데, 그 중간에 막스 베버(Max Weber)가 등장한다. 괴테의 원초현상(Urphänomen)의 개념과 베버의 이념형(Idealtypus)의 개념이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괴테가 원초식물(Urpfanze)을 찾으려고 애썼으며, 그것은 ‘실패’했지만 셸러(Schiller)처럼 처음부터 그것을 하나의 이념(Idee)으로 보지 아니하였다.<sup>19)</sup>

괴테는 사물의 본성(Natur der Sache)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자명성의 표현형식(Ausdrucksform einer Selbstverständlichkeit)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로빈슨 크루소도 시대적 제약을 받았다는 것은 사물의 본성이다”(Daß Robinson Crusoe sich zeitig angeschlossen ist, liegt wohl in der Natur der Sache)<sup>20)</sup> 라고 하였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Wanderjahre)에서는 “음악가가 마술가보다 덜 아름다운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이다”고 하였다.<sup>21)</sup>

아무튼 괴테의 원초식물, 사물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 구추의 정신이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특징적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깊다고 하겠다.

17) 자세히는 G. Radbruch, *Die Natur der Sache als juristische Denkform*, 1941.

18) G. 라드브루흐/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2000, 38면.

19) 괴테의 Urpfanze와 Morphologie에 관하여는 Marie-Luise Kahler, Art. Urpfanze와 John Erpenbeck, Art. Urphänomen, in: *Goethe-Handbuch*, Bd. 4/2, 1998, SS. 1077-1082.

20) Goethe, *Dichtung und Wahrheit*, in: FA Bd. 14, S. 42.

21) Goethe, *Wanderjahre*, FA Bd. 10, S. 523.

### III. 자연법(Naturrecht)

자연법이란 개념만큼 법철학에서 중요하면서도 애매 모호한 개념은 없다. 그래서 라드브루흐도 자연법이란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는 자연법론자의 방향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해석이다.<sup>22)</sup>

괴테는 슈트라스부르크대학 박사논문 56테제에서 첫 명제와 끝 명제를 자연법에 관하여 취급하였다. 자연법(ius naturae 혹은 jus naturale)이란 개념은 이미 로마시대부터 사용되었는데, 키케로(Cicero)는 노예제는 자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근세의 볼프(C. Wolff), 라이프니츠(Leibniz) 같은 사상가들에게 자연법은 중요한 개념이었다. 괴테에게 스피노자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어쨌든 노예제가 자연법의 요청이라는 생각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파우스트」에도 유명한 학생장면에서 이렇게 말한다.

Es erben sich Gesetz' und Rechte  
Wie eine ewige Kankheit fort  
Sie schleppen von Geschlecht sich zum Geschlechte  
Und rücken sacht von Ort zu Ort  
Vernunft wird Unsinn, Wohltat Plage  
Weh dir, daß du ein Enkel bist!  
Vom Rechte, das mit uns geboren ist,  
Von dem ist leider! nie die Frage.<sup>23)</sup>

22) 최종고, G. 라드브루흐연구, 박영사, 1995.

23) Goethe, *Faust I*, V. 1970f. 이것은 「파우스트」의 법학적 이해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국내의 번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커다란 혼선이 보인다.

<1. 강두식 역>

대체로 법률이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질과 같이 유전이 되는 것으로서/ 한 대(代)에서 다음대로 줄줄이 이어 내려가고/ 한 고장에서 다른 고장으로 슬금살짝 옮겨가기도 하는 것일세/ 도리(道理)가 불합리로 변하고, 선행이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 자손으로 태어난 자만이 서럽단 말일세!/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린데/ 그것은, 딱하게도 전연 문제가 안되고 있네.(강두식 역, 「파우스트」, 세계문학전집 30, 을유문화사, 1965, 112면).

<2. 김정진 역>

무릇 법률이니 제도니 하는 것은/ 영원한 질병처럼 유전되어 가는 것이네/ 조상에

‘우리에게 타고난 법’(das Recht, das mit uns geboren ist),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 이 법은 바로 자연법(Naturrecht)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해석한다.<sup>24)</sup> 말하자면, 자연법은 법률(Gesetz)과 실정법(Recht)과는 근본

서 자손으로 대대로 물려 내려오며/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천천히 옮겨가지/ 그 동안에 합리가 불합리로 변하고, 착한 일도 고통의 원인이 되네/ 자손으로 태어난 자야말로 불쌍하지/ 그런데 사람이 낳을 때부터 타고난 권리라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어디서나 문제도 되지 않아.(김정진 역, 『파우스트』, 괴테문학전집 2권, 휘문출판사, 1968, 66면).

#### <3. 박찬기 역>

대체로 법률이나 제도 같은 것은/ 영원한 질병과 같이 언제나 계승되어 가는 것으로서/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 내려가네/ 한 지방으로부터 다른 지방으로 슬그머니 옮겨가는 것이네./ 조리는 부조리로 되고 선행은 고통으로 변하니./ 자네처럼 자손으로 태어난 자야말로 불쌍하도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기본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구하는 자가 없으니 딱한 노릇이야.(박찬기 역, 『파우스트』, 삼성판 세계문학전집 7, 삼성출판사, 1984{초판})

#### <4. 박환덕 역>

법이든 법률이든 하는 것은/ 마치 영원한 질병처럼 유전되어 간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천천히 끝나가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조용히 옮겨간다/ 그러는 사이에 합리는 불합리가 되고, 자비 깊은 법은 악법이 된다/ 손자대에 태어난 너는 불쌍하지!/ 우리들이 갖고 태어난 권리 같은 것은/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법률학의 화제에도 오르지 않아.(박환덕 역, 『파우스트비극 제1부』, 서울대출판부, 1998, 89면).

#### <5. 최두환 역>

대저 법률이든 권리가든 하는 것은/ 영원한 고질병처럼 유전되는 것이라/ 한 대에서 다음대로 질질 이어지고/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슬쩍 옮겨가기도 하지/ 이성이 불합리가 되고 선행이 억압으로 된단 말야/ 손자 세대에 태어난 자 가련한지고!/ 우리 인간의 천부적 권리에 관해선 딱할지고!/ 문제로 다루어진 적이 한번도 없네.(최두환 역, 『파우스트』, 시와 진실, 2000, 90면).

#### <6. 영어역>

Statutes and laws, like inherited sickness/ are languidly transmitt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and slowly shift from one place to another/ Sense becomes nonsense, or a benefit nuisance-/ it's just too bad you're a descendant!/ As for the right that's ours by birth,/ alas! that never is at issue. (*Faust I.* trans. by Stuart Atkins, Suhrkamp/Insel, Boston, 1984, p. 50).

#### <7. 필자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다>

법률과 법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질병처럼 유전되는 것이네/ 한 대에서 다음 대으로 질질 이어지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슬쩍 옮겨가기도 하지/ 이성이 불합리가 되고 선행이 억압으로 되네/ 손자대에 속하는 너는 불쌍하지!/ 우리에게 타고난 법에 관하여는/ 딱하게도 전혀 물음이 안되네!.

요는, Recht는 권리가 아니라 법이고, das Recht, das uns geboren ist는 내용은 권리(자연권)와 통하지만 문언상으로는 ‘우리에게 타고난 법’이라 번역해야 한다.

24) W. Witte, Goethe and Jus naturale, *Publication of the English Goethe Society*,

적으로 다르다고 본 것이다.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경직된 실정법(positives Recht)이 고질병처럼 유전되는 것(perennieren)이다. 그것은 합법적(legal)이긴 하지만 정당한 것(legitim)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법감각(lebendiges Rechtsempfinden)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괴테가 살던 18세기의 법제도가 이런 면에서 낙후되어 있었다는 점은 이미 당시 심각한 문제였다. 점점 가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질서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그리고 계몽사상에 의하여 인도되는 관념과 인식의 변화는 당시의 현행법을 하나의 불법(Unrecht)처럼 보이게 했고, 불안정 속에 있었다. 프랑스혁명을 통하여 합법성(Legalität)과 정당성(Legitimität)의 불일치가 역사적 현실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자연법에의 호소가 더욱 중요성을 띄게 되었던 것이다.<sup>25)</sup>

그러나 괴테의 자연법사상은 궁극적으로 신적 질서(göttliche Ordnung)로서의 세계관에 기초한 것으로 설명된다.<sup>26)</sup> 괴테의 이러한 세계관은 자연에 대한 경이, 원초현상과 원초식물에 대한 연구에로 연결됨은 위에서 보았다.

#### IV. 법이념과 상호모순(Rechtsidee und ihre Antinomien)

라드브루흐는 법을 ‘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있는 현실’(die Wirklichkeit, die den Sinn hat, der Rechtsidee zu dienen)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현실과 이념을 연결지어 설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해 라드브루흐는 처음부터 괴테의 다음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념을 회피하는 자는 개념조차 파악할 수 없다”(Wer sich von der Idee scheut, hat auch zuletzt den Begriff mehr nicht).<sup>27)</sup> 괴테는 이렇게도 말했다. “개념은 현상의 총계요, 이념은 그 결과이다. 개념을 취하는 것은 오성이요, 이념을 파악하는 데는 이성이 필요하다”(Begriff ist Summe, Idee Resultat der Erscheinung, jene zu ziehen wird Verstand, dieses zu erfassen Vernunft erfordert).<sup>28)</sup>

vol. 22, 1953, pp.107-128, Berthold Kastner, *ibid.*, SS. 217-238; 국내에서 이 대목의 Gesetz und Rechte를 ‘법률과 권리’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때의 Recht는 subjektives Rechte(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positives Recht(실정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25) 자세한 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2000(년판), 126-149면.

26) Otto Badelt, *Das Rechts- und Staatsdenken Goethes*, Bonn, 1966, SS. 123-126.

27)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in: FA Bd. 13, S. 15.



라드브루흐는 법이념을 정의(Gerechtigkeit), 합목적성(Zweckmäßigkeit), 안정성(Rechtssicherheit)의 세 이념의 3원론(Trialismus)으로 설명하고, 그 중 어느 하나를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면 다른 두 가치는 부차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상호모순(Antinomien)과 상대주의(Relativismus)로 그 한계를 설명한다.

괴테의 정의관은 좀 미묘하다. “정의는 독일인의 특성이면서 유령”(Gerechtigkeit: Eigenschaft und Phantom der Deutschen)이라고 쓰기도 하고,<sup>29)</sup> “마음의 선량함은 정의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Die Güte des Herzens nimmt einen weiteren Raum ein als der Gerechtigkeit gefäumiges Feld)고 썼다.<sup>30)</sup> “정의는 안대(眼帶)를 차고 있어 어떤 사물에든 눈을 감는다”(Auch die Gerechtigkeit trägt eine Binde/Und schließt die Augen jedem Blendwerk zu)<sup>31)</sup>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괴테가 정의보다는 질서를 더 중요시했다는 사실은 다음의 유명한 자신의 표현으로 대변된다. “내 천성은 이러하다. 나는 무질서를 참기보다 차라리 부정의를 행하겠다”(Es liegt nun einmal in meiner Natur, ich will lieber eine Ungerechtigkeit begehen, als Unordnung ertragen).<sup>32)</sup> 괴테의 ‘보수성’은 정치적으로도 설명되겠지만, 보다 원천적으로 이러한 가치관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존경한 라드브루흐 역시 정의는 법의 먼 이념이고, 보다 가까운 법이념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철학을 전개하였다.

## V. 법률 혹은 법칙(Gesetz)

법학을 배웠기 때문에 괴테는 법률(Gesetz)의 의미와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아래에 괴테의 저작에서 실정법률에 대한 언급을 뽑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관점과 생각에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8)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in: FA Bd 13, S. 86.

29)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A 9, S. 625.

30)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A. 9, S. 666.

31) Goethe, *Torquato Tasso*, 2. Aufzug. 2. Auftritt, Tasso, A. 6, S. 251.

32) Goethe, *Belagerung vom Mainz*, in: FA Bd. 16, S. 603. 이에 관하여는 Klaus Lüderssen, “Ich will lieber eine Ungerechtigkeit begehen, als Unordnung ertragen, Klaus Lüderssen(hrsg.), *Die wahre Liberatität ist Anerkennung: Goethe und die Jurisprudenz*, Baden-Baden, 1979, SS. 177-192.

모든 실정법(Gesetze)은 개인의 자력구제(自力救濟, Selbsthilfe)를 서로 방지하기 위한 결점 있는 시도이다.<sup>33)</sup>

모든 실정법들은 세계와 인생의 진행에서 도덕적 세계질서예의 의도(Absichten)에 가까이 가려는 시도이다.<sup>34)</sup>

엄격한 법률(Gesetze)들은 이내 무디어지고 점점 느슨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연은 항상 그 법(Rechte)을 주장하기 때문이다.<sup>35)</sup>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위반할 수 있는가를 새롭게 생각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 된다. 오랜 것은 이미 버린 것이다.<sup>36)</sup>

모든 법률들은 어른과 남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청년과 여성은 예외를 원한다. 어른들만 규율을 원한다.<sup>37)</sup>

우리의 법률들 자체가 냉혈적 현학자(衞學者)이다.<sup>38)</sup>

인간이 모든 법률들을 공부해야 한다면, 그는 그것을 위반할 시간이 전혀 없다.<sup>39)</sup>

세계에 법률이 없는 것보다 불법(Unrecht)이 일어나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야 한다.<sup>40)</sup>

법률은 힘이 세다. 그러나 궁핍(Not)은 더 힘이 세다.<sup>41)</sup>

배고픔(Hunger)은 법률을 인정하지 않는다.<sup>42)</sup>

거의 모든 법률은 불가능한 것의 종합(Synthese)이다. 혼인의 제도가 그 예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 것은 좋은 것이다. 인간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함으로써 가장 가능한 것이 추구되기 때문이다.<sup>43)</sup>

33) Goethe, Zu Caroline Freifrau v. Egloffstein am 29. 4. 1818(C. 3, 1, S. 58f).

34)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A. 9. S. 650.

35) Goethe, Wilhelm Meisters Wanderjahre, 3. Buch, H. Kapitel(A8. S. 437).

36) Goethe, Italienische Reise II, Prinzeßchen, A. 11. S. 223.

37)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S. 591.

38) Goethe,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 I. Buch, 12. August, S. 423.

39)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S. 519.

40)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S. 610.

41) Goethe, *Faust* II, 1. Akt. Kaiserliche Pfalz, Plutus Vers5800(A5. S. 326).

42) Goethe, Kampfgne in Frankreich, 4. 10. 1792(A12. S. 314f).

주먹에 칼을 쥐고 군대의 우두머리에 앉아 인간은 명령하고 법률을 부과한다. 인간은 복종함으로써 안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곤란한 사항이 있을 뿐이다.<sup>44)</sup>

종두법(種痘法, Impfgesetz)에 관한 제안은 관철되어야 한다. 나는 항상 엄격히 법대로 하는 데에 찬성이다. 인간은 연약과 과장된 자유주의에서부터 어디 서나 공정하기보다 더 관대해지기 때문이다.<sup>45)</sup>

수년 전부터 진행된 전쟁적 상황을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시민적 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와 소설의 독서를 통하여도 법률들은 침묵하고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없게 되는 매우 많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sup>46)</sup>

나는 자의(恣意)가 우리의 본성을 이리저리 몰고 갈 때 실수하는 것보다 규칙(Regel)에 따라 실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싶다. 내가 인간을 보는 한 인간의 본성 속에 항상 하나의 공백이 머물러 있는 듯 하다. 그 공백은 단호히 언명된 법률을 통하여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sup>47)</sup>

우리가 법률 내부에서 만나는 가장 나쁜 것은 그것이 자연적이건 시민적이건, 육체적이건 경제적이건 항상 아직도 수천 가지 무교양(Unbilden)을 매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교양은 우리가 투쟁해야 한다. 우리가 법률의 외부 혹은 근처에서 혹은 심지어 법률과 전승을 점검할 때, 같은 무게 속에 도덕적 세계질서를 머물게 하고 필연성을 감지하도록 해야 한다.<sup>48)</sup>

법률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곳에는 현명(Klugheit)이 조언해주어야 한다.<sup>49)</sup>

법률의 혼란성(Verworrenheit)은 떨어버리기 어렵다. 법률 그 자체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결정해야 할 필연성이다. 동전에 동전 던지기의 주사위 놀음 같다.<sup>50)</sup>

43) Goethe, Zu Kanzler F. v. Müller am 19. 10. 1823(A23. S. 312).

44) Goethe, Zu Eckermann am 2. 4. 1829.(A24. S. 312).

45) Goethe, Zu Hofrat Vogel. Gespräche mit Eckermann am 192. 1831(A24. S. 456).

46) Goethe, *Dichtung und Wahrheit*, 1. Teil, 4. Buch, Aus Goethes Jugendzeit,(A18. S. 162).

47) Goethe, Wilhelm Meisters Lehrjahre, 8. Buch, 3. Kapitel, Natalie(A7. S. 566).

48) Goethe, Brief an K. E. Schubarth vom 7. 11. 1821(WA IV, 35. S. 170).

49) Goethe, Brief an Verleger Gotta vom 25. 3. 1816(WA IV. 36. S. 308).

50) Goethe, Einfälle und Notizen, Juli-Oktober 1775(B5. S. 380).

독일의 법전을 가지려고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을 뻗쳐 잡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민법대전』(*Corpus Civilis*)이 많은 미세련(未細練)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세련된 책도 없다.<sup>51)</sup>

법률은 항상 예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정되는 것이다. 예외가 바로 주안(主案)이다.<sup>52)</sup>

철학사는 연구하고 세상인은 행동한다! 연구자가 법률을 완수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잘못이다.<sup>53)</sup>

법률이 인간을 만들지  
인간이 법률을 만들지 않는다.  
위대한 필연성은 고양시키고  
소소한 것은 인간을 절하시킨다.<sup>54)</sup>

법률을 제정하는 자는 자기 시대의 의미를 숙고해야 한다.<sup>55)</sup>

법률에 따르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법률이 적용되는 장소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sup>56)</sup>

법률을 통하여 의무를 배우고 그것이 방해될 때 화염과 검(劍)으로 돌아오게 하라.<sup>57)</sup>

법률 속에서는 형벌은 축적될 뿐  
너무 그렇지 않으면 왕에게 부담이 커진다.<sup>58)</sup>

자신의 의미에 따라 사는 것은 공통적이다.  
고상한 사람은 질서와 법률을 지향한다.<sup>59)</sup>

51) Goethe, Enfälle und Notizen, Juli-Oktober 1775(B5. S. 380).

52) Goethe, Zu K. A. Varnhagen v. Ense am 19. 9. 1829(A23. S. 642).

53) Goethe, Xenien aus dem Nachlaß, Verkehrter Beruf(A2. S. 501).

54) Goethe, Tagebücher, 25. 5. 1797(A26. S. 209).

55) Goethe, Votum vom 14. 12. 1780(O1. S. 116).

56) Goethe, Wilhelm Meisters Wanderjahre, 2. Buch, 2. Kap.(A8. S. 180f).

57) Goethe, Zweite Fassung des Estherspiels, Human(B3. S. 150).

58) Goethe, Zweite Fassung des Estherspiels, Marchodai(B3. S. 157).

59) Goethe, Paralipomena zu: Die natürlische Tochter, handschriftliche Schema der

한 마디로 무어라 정리할 수 없이 괴테는 실정법의 여러 면모를 생생하고 예리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괴테에게 있어서 Gesetz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인간이 만든 법률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연법칙(Naturgesetz)만도 아닌, 양자가 서로 연결되는 유연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되며, 그것이 괴테의 법사상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를 이룬다고 하겠다. 에르펜베크(John Erpenbeck) 교수는 Gesetz를 괴테의 세계상(Weltsicht)과 인생관(Lebensorientierung)에서 중심적 개념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즉 1) 시민법적, 국가법적 법률(zivil-, staatsrechtliches Gesetz), 2) 미학적 규범, 규칙, 습속(asthetische Normen, Regeln und Konventionen), 3) 자연과학적, 물리학적 법칙(naturwissenschaftliches, physikales Gesetz), 4) 변형론(Morphologie)에서 나타나는 발전법칙(Entwicklungsgesetze), 5) 스피노자(Spinoza)에 연결되는 필연성, 영원성, 법칙성(Notwendigkeit, Ewigkeit, Gesetzlichkeit)으로 이해하였다.<sup>60)</sup> 괴테가 “예술은 스스로 법칙을 주고 시간을 제공한다. 딜레탄티즘은 시간의 경향을 따른다”(Die Kunst giebt sich selbst Gesetze und gebietet der Zeit: der Dilettantismus folgt der Neigung der Zeit)<sup>61)</sup>라 했을 때, 그 법칙의 의미는 상당히 애매하면서도 독창적인 것 같이 들린다.

## VI. 법(das Rechte)

법(das Recht)은 주관적으로 보면 권리(subjektives Recht)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실정)법(objektives Recht)이다. 괴테의 권리 내지 법관(法觀)은 어떠한가?

법(das Recht)은 책임을 추궁한다.

법은 교량(較量)하고 판정한다.

---

Fortsetzung(WAI., 10. S. 444).

60) John Erpenbeck, Art. Gesetz, in: *Goethe-Handbuch*, Bd. 4/1, 1998, SS. 575-577; 그리고 Albrecht Schöne, *Goethes Farbtheologie*, München, 1987; Frank Schweitzer, Goethes Morphologie-Konzept und die heutige Selbstorganisationstheorie, in: *Selbstorganisation: Jahrbuch für Komplexität in der Natur-, Sozial- und Geisteswissenschaften*, Bd. 3, 1992, SS. 167-194.

61) Goethe, *Über den Dilettantismus*, S. 319; Michel Niedermeier, Art. Dilettantismus, in: *Goethe-Handbuch*, Bd. 4/1, 1998, S. 214에서 인용.

법은 개인에게 관계한다.<sup>62)</sup>

법률과 법은 유전된다.

마치 영원한 질병과도 같이...

우리에게 타고난 법에 관하여는

딱하게도 물음이 안 된다.<sup>63)</sup>

지옥도 그 법을 갖는다?<sup>64)</sup>

우리는 그렇게 많은 법을 던져 주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법도 남아있지 않도록.<sup>65)</sup>

권리를 갖고 인내를 가진 자

그를 위해 시간은 찾아온다.<sup>66)</sup>

인간은 힘(Gewalt)을 갖듯 법을 갖는다.

인간은 무엇(Was)에 대해 묻지 어떻게(Wie)를 묻지 않는다.<sup>67)</sup>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간다.

내려오는 관습, 오랜 법

그런 것을 전혀 의지할 수 없게 된다.<sup>68)</sup>

이제 누구에게 나는 고소해야 하나?

누가 나의 얻은 권리를 지었는가?<sup>69)</sup>

그릇된 것을 변호하려는 사람은 조용히 시행하고 세련된 삶의 방식을 고백  
할 모든 이유를 가진다. 그러나 법을 자신의 편으로 느끼는 사람은 굳세게 밀

62)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Gedenkausgabe*, Bd. 9, S. 569.

63) Goethe, *Faust I*, *Studienzimmer* vers. 1972/79, *Gedenkausgabe*, Bd. 5, S. 201f.

64) Goethe, *Faust I*, *Studienzimmer* vers. 1413, *ibid.*, S. 196.

65) Goethe, *Faust II*, Akt. Kaiserliche Pfalz, *Gedenkausgabe*, Bd. 5, S. 298.

66) Goethe, *Faust II*, *ibid.*, S. 491.

67) Goethe, *Faust II*, *ibid.*, S. 496.

68) Goethe, *Faust II*, *ibid.*, S. 510.

69) Goethe, *Faust II*, *ibid.*, S. 517.

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짐작은 법이란 아무 것도 아니다.<sup>70)</sup>

우리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법이다.<sup>71)</sup>

얼마나 놀라운 사정이나!

사람들에게 법을 말해야 하고 요란한 법을 정의(正義)에 이르게 할 수 없는  
능력있고 용감한 사람을 갖는다는 것은.<sup>72)</sup>

법은 법으로 머문다. 법을 가진 자는 그것을 맨 나중에 보인다.<sup>73)</sup>

그것(소송사건)은 어떻게 악명 높아지는가? 단순한 눈길에 의해서이다. 그것  
은 눈 속으로 떨어진다! 인간은 그 모든 구석을 본다고 그(소송 반대자)는 말한  
다. 인간은 어떤 법도 볼 수 없다...<sup>74)</sup>

일년 내내 나는 내 코를 냄새 맡게 한다.

그러면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법을 가지는가?<sup>75)</sup>

괴테가 사용한 *das Recht*의 개념이 법으로도 쓰이고 권리로도 쓰이는데, 이것  
은 독일어 *Recht*란 말이 갖는 장점인 동시에 동양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특징이  
라고 하겠다.

## VII. 의무(Pflicht)

‘법률가’ 괴테가 인간을 얼마나 권리적 존재와 의무적 존재로 보았는가? 인간  
관계는 얼마나 권리-의무 관계이고, 그렇지 않은 영역은 어떻게 보았는가? 흔히  
동양은 의무중심의 문화이고, 서양은 권리중심의 문화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괴테의 의무에 관한 언급을 추려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70)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ibid.*, S. 652.

71) Goethe, *Die natürliche Tochter*, 2. Aufzug, 1. Auftritt, S. 341.

72) Goethe, *Wilhelm Meisters Wanderjahre*, 1. Buch, 9. Kapitel. *ibid.*, S. 145.

73) Goethe, *Reineke Fuchs*, 11. Gesang, vers 321. *Gedenkausgabe Bd. 3*, S. 145.

74) Goethe, *Anwaltseingabe in Sachen Hemmerich gegen Stadt Frankfurt vom 24. 7. 1773*. S. 370.

75) Goethe, *Xenien, Rechtsfrage*, HA Bd. 1, S. 221.

우리가 사람들에게 의무만 요구하고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들에게 대가를 잘 지불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sup>76)</sup>

의무란 사람이 스스로 명령하는 것을 사랑하는 곳이다.<sup>77)</sup>

수행된 의무는 여전히 채무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히 행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78)</sup>

인간은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는가? 성찰을 통하여서는 아니다. 어찌면 행동을 통하여 일 것이다. 너의 의무를 행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너에게 내재해 있는 것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루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다.<sup>79)</sup>

오늘 나는 순종할 수 없다.

오늘 나는 자유와 정신으로 나간다.

그러나 이내 나의 의무로 돌아온다.<sup>80)</sup>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괴테는 인간의 의무, 즉 인간으로서 무엇을 주장하기보다도 모름지기 해야 할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것처럼 보인다.

## VIII. 법률가(Jurist)

괴테는 법률가라는 직업 내지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보았는가?

서민은 내가 법률가라고 들었다면 돌팔매를 들었을 것이다.<sup>81)</sup>

76)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Gedenkausgabe*, Bd. 9, Artemis-Verlag, 1948-71, S. 516.

77) Goethe, *ibid.*, S. 610.

78) Goethe, *ibid.*, S. 566.

79) Goethe, *ibid.*, S. 554.

80) Goethe, *Torquato Tasso*, 4. Aufzug, 4. Auftritt, vers 2713/15, HA. Bd. 5, S. 146

81) Goethe, *Geschichte Gottfriedens von Berlichigen mit der eisernen Hand*. *Der junge Goethe*, Bd. 2, S. 113.



그들은 법률가를 국가의 혼란자, 하나의 돈주머니를 칼로 베는 자처럼 나쁘게 생각한다.<sup>82)</sup>

법률가는 너에게서 소송을 이겨준다. 그리고 같은 법을 가진 너의 적(敵)에게 거지 지팡이를 가져다 준다.<sup>83)</sup>

법률이 불완전 시간에 따라 소멸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실제적 법률가는 개별적 사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되고 선의를 갖고 빠져 나오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84)</sup>

당신들 법률가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갖고 있어 판결하기 전에 쌍방으로부터 듣고 시험한다. 자연과학에서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갖는데 대부분 가정(Hypothesen)들이다. 듣고 시험하고서 자신의 의견을 겸손히 말한다.<sup>85)</sup>

당신들 법률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족속이다.<sup>86)</sup>

자기의 풍부함을 증폭하는 자, 특히 법률적, 국가적 사항에서 정신적 활동을 상승하는 자는 어디서나 하나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sup>87)</sup>

우리는 신학자를 관찰하고, 의사를 조소하고, 철학자에 대해 농담한다. 그러나 법률가에게는 변호하고 이들이 그 시대에 의해 교육받고 시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이 시민적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지기 때문이다.<sup>88)</sup>

82) Goethe, *Gotz von berlichigen mit der eisernen Hand*, 2, Fassung, *ibid.*, S. 200.

83) Goethe, *Die Aufgerechten* 1, Aufzug, *Gedenkausgabe*, Bd. 6, S. 715.

84) Goethe, Zu Kanzler F. v. Müller am 9. 8. 1827, *Goethes Gespräche*, Bd. 3, Stuttgart, 1965-85, S. 160.

85) Goethe, Zu J. S. Grüner, Magistrats- und Polizeirat in Eger, am 27. 7. 1822, *Goethes Gespräche*, Bd. 3, S. 385.

86) Goethe, Zu Prof. G. Hugo in Göttingen am 23. 5. 1809, *Goethes Gespräche*, Bd. 2, S. 445.

87) Goethe, *Dichtung und Wahrheit*, 17, Buch, *Gedenkausgabe*, S. 773.

88) Goethe, *Ansprachen*, 'über die verschiedenen Zweige der hiesigen Tätigkeit, 1789, *Gedenkausgabe*, Bd. 12, S. 680.

법률가로서, 그리고 법률가의 아들로서 사고(思考)에서의 정확성과 신중함을 배운 사람은 색채이론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sup>89)</sup>

적지 않은 문학가들이 법률가를 비판하거나 조소하는 경우와는 달리 괴테는 대체로 법률가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것처럼 보인다.

## IX. 국가(Staat)

괴테의 국가관을 이해하려면 좁은 의미의 법률가로서만이 아니라 그의 공직자로서의 활동과 사상 전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가 활동한 바이마르에도 적지 않은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문제들이 있었다.<sup>90)</sup> 적어도 그의 헌법관, 국가의 목적관, 민주주의와 인민관, 정부형태론, 입법론 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sup>91)</sup> 그러나 이것은 크게 보아 법률가로서의 괴테보다도 정치가로서의 괴테에 대한 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만 설명한다. 라드브루흐는 괴테를 “그는 확실히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더구나 혁명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는 좋은 의미의 귀족주의자(Aristokrat)였다. 그러나 민중의 친구, 즉 사람들이 낮게 부르지만 신 앞에서 가장 높은 민중의 친구였다”고 한다.<sup>92)</sup>

괴테는 민중성(Volksheit)을 존중하였지만 다수(Menge 혹은 Majorität)에 대하

89) Siegfried von der Trenck, *NJW* 1932, S. 828; *Goethe-Handbuch*, 1998, Bd. 4/1, S. 593에서 인용.

90) 자세한 것은 W. Daniel Wilson, *Das Goethe-Tabu: Protest und Menschenrechte im klassischen Weimar*, dtv. München, 1999; 안삼환,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 들어 있는 정치적 함의, *괴테연구* 9집, 1997, 117-136면; 조우호, 괴테의 정치관, *괴테연구* 12집, 2000, 121-144면.

91) 자세한 것은 최근 논저로 Jochen Golz, *Goethe als Politischer Gestalter*, in: *Damals* 1999/7, S. 30-35; Ekkhart Krippendorff, *Goethe: Politik gegen den Zeitgeist*, Leipzig, 1999; Hannelore Schlaffer, *Goethe im Amt*, *Neue Rundschau* 1999, S. 20-23; Adolf Schöll, *Goethe als Staatsmann*, Schutterwald/Baden, 1999; Theo Stammen, *Goethe und die politische Welt*, Würzburg, 1999; Rudolf Weber-Fas, *Goethe als Jurist und Staatsmann*, *Bayerische Verwaltungsblätter*, 1999, S. 481-485; W. Daniel Wilson, *Das Goethe-Tabu, Protest und Menschenrechte im klassischen Weimar*, München, 1999; W. Daniel Wilson, *Unterirdische Gänge, Goethe, Freimaurerei und Politik*, Göttingen, 1999.

92) G. Radbruch, *Kulturrehre des Sozialismus*, 1927, S. 66, 1970년판 S. 74.

여는 언제나 부정적이고 거리감을 두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프랑스혁명에서 얻은 두려움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는 민중(Volk)은 ‘현명하고 교양된 인격적 지도’(weise, bildende, gestaltgebende Führung)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sup>93)</sup> 과연 민중성(Volkshheit)이 무엇이나, 루소의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와 같은 뜻이나,<sup>94)</sup> 사비니가 말하는 민족정신(Volksgeist)와 같은 것이냐에 대해 학자들의 구구한 설명이 있다. 라트브루흐는 『파우스트』의 마지막 독백에서 ‘공동요구’(Gemeindrang)를 민족정신(Volksgeist) 내지 민중성(Volkheit)과 결부시킨다. 나아가 『파우스트』의 ‘자유로운 민중에 대한 자유로운 기초에 서기’(auf freiem Grund mit freiem Volk zu stehen)를 사회주의(Sozialismus)에 대한 비전으로 해석한다.<sup>95)</sup>

어쨌든 자유제국도시(Freie Reichsstadt) 프랑크푸르트의 시민으로 계몽군주(aufgeklärter Monarch)가 지배하는 작센-바이마르국에 와서 재상까지 된 괴테가 국가형태 내지 통치방식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민주정치(Demokratie)보다 전제정치(Autokratie)에 관심이 컸고, 그에게 권력분립(Gewaltenteilung)의 이론은 공명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입법과 법해석은 군주의 몫이었다(슈트라스부르그테 제43, 44번). 그는 통일적 법전편찬은 불가능하고, 각 법률들을 수집할 뿐이라 하였다. 법률의 해석에 대해 괴테는 ‘온순한 크세니엔’(Zahme Xenien)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해석에서는 신선하고 유쾌하게!

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도록.

(Im Auslegen seid frisch und munter!

Legt ihr's nicht aus, so legt was unter.)<sup>96)</sup>

법률에 대한 보충(Ergänzung)은 항상 입법자의 손에 있다. 프로이센 일반란트(Allge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ßischen Staaten) 총칙 47조에 따르면, 해석권은 법률위원회(Gesetzkommission)에 있다. 슬로셔(Schlosser)는 이것을 판사의

93) E. R. Huber, *Goethe und der Staat*, 1944, S. 11.

94) 에른스트 카시러/유철 옮김, 루소, 칸트, 괴테, 서광사, 1996.

95) G. Radbruch, *Wilhelm Meisters sozialistische Sendung*, 1944, S. 112.

96) Goethe, *Zahme Xenien*, II, in: FA Bd. 2, S. 636.

비성숙성과 비존엄성이라고 거부하였다. 괴테는 판사의 법제정, 즉 판사법(Richterrecht)을 부정하였다. 이것을 ‘보충성의 자동기’(Subsumtionsautomaten)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97)</sup> 괴테는 1772년 2월 3일 헤켈 대 헤켈(Heckel gegen Heckel) 사건에 대한 변론에서 판사는 ‘경륜 있는 나이’(erfahrener Alter)에 맡겨져야 한다고 적었다.<sup>98)</sup>

괴테는 슈트라스부르크 테제 46번에서 ‘국가의 안녕이 최고의 법률이다’(Salus rei publicae suprema lex esto)고 하여 국가의 안녕(Wohl des Staates)을 입법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이 말은 저 유명한 키케로(Cicero)의 ‘민중의 행복(salus populi)이 최고의 법률이다’<sup>99)</sup>는 말을 ‘국가의 안녕’(salus rei publicae)이라고 고친 것이다. 술로서는 통치의 기초(fundamentum regnorum)를 정의(Gerechtigkeit)라고 하였다. 괴테는 정의이념은 국가의 안녕보다 약한 것이라고 보았다. “나는 기질상 무질서를 참기보다 부정의를 감행하겠다”고 하였다.<sup>100)</sup> 이러한 사상은 라트브루흐가 그의 법이념론에서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을 정의이념보다 가까운 이념으로 설명한 것으로 연결된다.<sup>101)</sup>

## X. 소유권(Besitz und Eigentum)

괴테는 소유 내지 재산(Eigentum) 그리고 점유(Besitz)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재산(Eigentum)은 점유(Besitz)없이 취득되어질 수 없다.<sup>102)</sup>

재산에만 맛을 들이면 인간은 그 정열(Leidenschaft)을 곧바로 거기 쏟게 된다.<sup>103)</sup>

97) Berhold Kastner, *ibid.*, S. 303.

98) Goethe, in: MA Bd. 1, 2, S. 564.

99) Cicero, *de legibus*, 3. 3. 8. in: ders., *Staatstheoretische Schriften*, S. 302.

100) Goethe, *Belagerung von Mainz*, in: FA Bd. 16, S. 603.

101) G. 라트브루흐/최종고역, **법철학**, 삼영사, 2000, 85-95면

102) Goethe, *Positiones Juris*, These 31.

103) Goethe, Zu Eckermann am 30. 12. 1823, *Gedenkausgabe*, Bd. 24, S. 538.

정신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성직자를 믿지 않고 작가의 정신적 재산에 대하여도 믿지 않는다.<sup>104)</sup>

그리고 괴테는 소유 혹은 「재산」(Eigentum)이란 시에 이렇게 읊고 있다.

나에게는 아무 것도 속해있지 않다.  
아무 방해 없이 내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상(Gedanke) 외에는.  
그리고 행복한 매순간마다  
사랑스런 세련이 나를  
기초에서부터 즐기도록 만든다.<sup>105)</sup>

「파우스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너의 애비들에게 물려받은 것  
그것은 네가 점유(besitzen) 하기 위해서만 취하라.<sup>106)</sup>

라드브루흐는 이러한 괴테를 개인주의적 소유이론(individualistische Eigentumstheorie)의 대표적 사상가로 취급한다. 라드브루흐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한다.

개인주의적 소유권론(individualistische Eigentumstheorie) 혹은 —우리가 이를 붙일 수 있다면— 소유권의 인격설(Personlichkeitstheorie des Eigentums)에 가장 고귀한 형태를 부여해준 사람은 괴테이다. 괴테는 그것을 체험하고 스스로 체험한 것을 의식한 후 자기의 사상으로 형성하여 저서에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여러 군데를 인용하는 대신에 그 중의 두 가지만을 인용하려고 한다.

에피메테우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이 너의 것이냐?

프로메테우스: 나의 활동력이 미치는 범위, 그 이상에도 그 이하에도 없다.

파우스트: 네가 네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점유하기 위하여 취득한다.

사람이 이용하지 않은 것은 무거운 짐이니, 순간이 만들어 주는

104) Goethe, Zu Kanzler F. v. Müller am 15. 5. 1823, *Gedenkausgabe*, Bd. 23, S. 260.

105) Goethe, *Lieder*, 1823, *Gedenkausgabe*, Bd. 1, S. 73.

106) Goethe, *Faust I*, Nacht, Vers. 682-683.

것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번 취득되면 계속적으로 확립되는 사소유권에 관한 정태적(靜態的) 견해에 대하여 동태적(動態的) 견해가 등장한다. 유행어를 쓰면 소유권의 계속적인 '통합'(Integration)을 필요로 한다. 소유권은 항상 반복하여 실행력을 가지고 충족되고 이용되며, 그럼으로써 항상 새롭게 획득되고 창조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소유권은 항상 새로운 점유 및 가공이 끊임없이 실행되고 있는 작업이다. 괴테가 이와 같은 소유권론을 말하면서 그의 소유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것, 즉 그의 수집품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수집품은 괴테의 뛰어난 작품의 하나이며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수집품 가운데서도 괴테는 그의 인격성을 재현시켜 활동케 하면서 묘사하였다. 그 수집품들을 가지는 것은 괴테에게 있어서 인격의 확장, 인격의 표현 및 인격의 투영으로 의식되고 있었다. 그러한 소유권은 인격의 일부로 되고 인격에 의하여 속속들이 침투되어 하나의 유기적 전체를 이루며, 그 전체 속에서 모든 개개의 대상이 비슷한 대상의 계열 속에 들어오으로써 가치, 심지어 경제적 가치까지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부분의 총합(總合)보다도 한층 가치있는 새로운 통일체가 생기며, 그것이 존재하는 한 소유권은 생산적으로 된다. 수집가의 정신은 종종 화학적 순수성을 가지고 다른 소유권의 일면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골동품 수집가는 물건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 타인에게 없다고 하는 데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나 괴테에 있어서는 소유의 기쁨(Besitzfreude)과 그 물건의 향유(Sachgenuß)가 아름다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괴테는 재상(宰相) 물러(Müller)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있어서는 소유는 대상의 바른 개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나는 소유함으로써 어떤 대상에 대한 갈망에 기초하는 착각에서 해방되고 비로소 사로잡힌 바 없이 안정되어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내가 소유를 좋아하는 것은 소유되는 사물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의 교양을 위해서이며, 그것이 나를 보다 안정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물건의 완전한 향유를 위한 소유! 그러나 괴테의 경우 물건의 향유는 그것을 타인과 함께 하는 데에서 비로소 최고조에 달한다. 「편력시대」(Wanderjahre) 속에서 그 개인주의적 소유권론의 정형을 보였고, 동시에 그 사회적 소유권론에의 전환을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잘 나타낸 것은 수집가 괴테였다. 즉 「소유와 공동재」(Besitz und Gemeingut) 다시 말하면 공동재로서의 소유(Besitz als Gemeingut).

인격설에 있어서 소유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이다. 단지 사람이 그 존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물건도 그 고귀성을 가진다. 사람이 단지 물건을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건도 사람에게 대하여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즉 가치에 따라서 보호되고 간직되고 이용되고 감상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Liebe)을 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물건이란, 법률가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단지 가축뿐만 아니라 생명 없는 것도 포함시킬 것이다. 종교적인 사람은 이러한 人과 物의 상호 대립적인 의무 관계, 즉 오직 소유되는 것만이 아니라 본래의 법칙에 따라 취급된다고 하는 物의 요구를 ‘神의 선물’(Gottesgabe)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특히 ‘일용할 양식’(tägliches Brot)은 신의 선물로서 미사의 의식에 있어서 주님의 살(肉)로 전화하는 빵의 신성함에도 비유된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빵을 가지고 노는 것을 금지하고 그 금지에 거역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것이다. 무솔리니(Mussolini)도 국내농업의 촉진을 위하여 이 빵송배에 결부시켜 빵의 명예를 위한 축제일을 제정하였다.<sup>107)</sup>

라드브루흐는 개인주의적 소유권론자로 괴테와 함께 피히테(Fichte)도 논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유권론의 대표로 로마교황의 회칙(回勅)을 들고 있다. 그러나 괴테의 소유권관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라드브루흐는 나중의 논문, 『빌헬름 마이스터의 사회주의적 사명』에서 서술하고 있다.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봉사하여야 한다”(Eigentum verpflichtet. Sein Gebrauch soll zugleich Dienst sein für das Gemeine Beste)는 사상, 1919년 바이마르헌법(Weimarer Verfassung)에서 실정화된 이 사상이 괴테에게서 이미 배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108)</sup> 괴테 같은 거대한 인물, 사상가에게서 두 측면이 모두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며, 그 해석도 학자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

라드브루흐는 「계약」(Vertrag)에 관한 장(제19장)에서도 『파우스트』의 다음과 같은 독백을 인용하고 있다. “입으로 말한 말이 영원히 나의 생애를 지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가? 세계는 모든 흐름을 이루어 잠시도 쉬지 않고, 나는 하나의 약속에 얽매어야 하는가?”<sup>109)</sup> 법학에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공리(公理)를 절대 신봉하고 있지만, 라드브루흐는 괴테와 더불어

107) 라드브루흐/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2000, 189-191면.

108) G. Radbruch, Wilhelm Meisters sozialistische Sendung, *Gustav Radbruch Gesamtausgabe* Bd. 5 Literatur- und kunsthistorische Schriften, Heidelberg, 1997, SS. 174-193

109) 괴테, **파우스트**, 라드부르흐 외 위 번역서, 197면에서 재인용

이러한 공리에도 근본적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왜 인간은 계약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은 법학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 XI. 형법(Strafe)

「파우스트」를 법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선 파우스트가 상당히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력하는 동안 실수하게 된다는 것이 인생의 진리이고, 그러면서도 인간이 성실하게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본사상이 깔려 있지만, 어쨌든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 한 그에 대한 법률적 책임, 곧 형벌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파우스트가 얼마나 많은 잘못(범죄)을 저질렀을까? 이것 또한 「파우스트」 이해에 흥미있는 토픽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110)</sup>

110) 파우스트의 범죄행위를 한국형법에 비추어 판단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 간음·추행죄: 그레첸의 경우 파우스트는 열네살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나 실제 나이는 알 수 없다. 단지 임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때 14세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에 대한 추행 내지 간음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 실제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레첸의 저항이 없었으므로 간음죄, 추행죄가 성립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한국형법 제305, 297, 298조)

2) 주거침입·퇴거불응죄: 파우스트는 몰래 그레첸의 집에 들어갔다. 나가 달라고 하지 않은 이상 퇴거불응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한국형법 제319조)

3) 절도죄 내지 절도교사죄: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가 그레첸에게 가져다 줄 패물을 다른 곳에서 절취하는 것을 알고도 그에게 패물을 준비하라고 시켰다. 따라서 메피스토펠레스에게는 절도죄가, 파우스트에게는 절도교사죄가 성립한다.(한국형법 제329조)

4) 과실치사죄: 파우스트가 어머니의 음료수에 수면제를 넣으라고 그레첸에게 권고하여 그레첸이 그렇게 하였다가 약을 너무 많이 넣어서 어머니가 죽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파우스트는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그레첸에게 수면제를 타도록 시킨 것은 아니므로 그레첸에게 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 해도 파우스트에게 살인교사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다.(한국형법 제267조), 유창국, 괴테문학에서의 자살문제, **괴테연구** 11집, 1999, 117-139면.

5) 살인죄·준속살인죄: 파우스트는 그레첸의 오빠 발렌틴을 칼로 찔러 죽였다. 파우스트는 살인죄를 범하였고, 그레첸은 준속살인죄를 범한 것이 된다.(한국형법 제250조)

6) 도주원조죄: 파우스트는 감옥에 침입하여 메피스토펠레스가 간수의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사이에 그레첸을 도주하게 하려 했으나 그레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래도 파우스트에게는 도주원조의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한국형법 제147조, 149조)

7) 방화죄: 파우스트는 궁정에 자신의 마술로 불을 지르게 한다. 현존 건조물에 불



「파우스트」가 범죄소설 내지 추리소설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인간의 파오에는 형벌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괴테가 얼마나 파우스트의 형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있는가 물어보게 되는데,<sup>111)</sup>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역시 인간의 형벌의 문제보다는 노력과 구원의 문제에 주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sup>112)</sup> ‘인간은 노력하는 한 실수하며’(Es irr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선한 인간은 어두운 곳에 있어도 바른 길을 안다’(Ein guter Mensch in seinen dunklen Drange, ist des rechten Weges wohl bewußt)는 괴테 자신의 믿음이 표현되고 있다. 법학에서도 사면(赦免, Gnade)이 논해지긴 하지만 그것은 은총(恩寵) 내지 구원(Erlösung)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

을 지르면 방화죄에 해당한다.(한국형법 제164조)

8) 통화물 제조죄: 파우스트는 왕국에서 태환지폐를 불법으로 유통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비록 왕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왕의 제가를 받은 후에 화폐를 제조한 것이므로 통화물 제조죄의 성립여부는 불투명하다.(한국형법 제211조)

111) 이항녕은 수필 「괴테와 라트브루흐」에서 짚막하지만 이런 생각을 토로하고 있다. “Heinrich Rickert가 쓴 「파우스트에 있어서의 내기」라는 논문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과 메피스토펠레스와의 내기에 있어서 파우스트가 영혼을 팔면 지옥에 떨어뜨리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왜 파우스트를 천당에 보냈느냐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는데, 법학을 공부한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 아무리 파우스트가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개선의 경이 현저하다면 구태여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 나는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괴테가 파우스트를 용서한 것은 괴테가 법학을 공부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괴테는 사형수인 파우스트를 재심 끝에 그의 情狀을 참작하여 무죄언도를 낸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진다.”(법조춘추 1974년 1월호, 23면)

112) 인간은 노력하는 한 파오를 범하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괴테의 근본사상은 동양적 유교적 인간관과도 통하는 바 있지만, 괴테의 교회비판과 ‘비정통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사상의 범주 안에 든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엔텔레키(Entelechie), 즉 자연과 인간을 ‘목적성’(Intention)을 가진 존재로 구원을 설명하기도 한다.(Andreas Anglet, Art. Entelechie, *Goethe-Handbuch*, 4/1, 1998, SS. 264-265) 자세히는 Jaroslav Pelikan, *Faust the Theologian*, Yale Univ. Press, 1995; Hans-Joachim Simm(hrsg.), *Goethe und die Religion*, Frankfurt a. M. 2000; 국내 논문으로 김승욱, 「파우스트」의 구원의 의미, 김주연, 「파우스트」의 기독교적 성격, 한국괴테협회 편, *파우스트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6, 61-93면. 어쨌거나 괴테 자신이 에커만에게 한 말은 이러하다. 즉 “계속 노력하며 애쓰는 자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는 천사들의 합창에 대해, “이 시구 속에 파우스트 구제의 열쇠가 들어 있다네. 파우스트 자신 가운데 점점 더 높고 깨끗한 활동이 그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며 하늘에서는 영원한 사랑이 그를 구하러 온다네. 이것은 우리가 자기 힘뿐 아니라 신의 가호에 의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관념과 완전히 조화된다네”(1831년 6월 6일 에커만과의 대화).

이라 할 것이다.<sup>1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테가 청년시절에 체험한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수잔나 마가레타 브란트(Susanna Margaretha Brandt)의 영아살해 사건과 사형집행을 목격하고 「과우스트」의 그레첸비극(Gretchenstragödie)으로 승화시킨 것은 알려진 얘기이다.<sup>114)</sup> 그리스도교 윤리가 지배적인 서양중세와 근세에서 사생아의 살해는 중죄악으로 무자비한 방법으로 사형이 처해졌다. 1532년 『카롤리나 형법전』(Constitutio Criminalis Carolina: CCC)에서는 영아살해여인에게 생매장을 부과하였고, 완화된 방법이라해도 물 속에 익사시키거나 목을 끊는 방법이었다. 1771년 괴테는 슈트라스부르크 테제에서 “영아를 죽인 여인을 사형시킬지 여부는 박사(학자)들 사이에 쟁점이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계몽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원인과 범죄의 심리학적 조건들이 주목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죽이도록 비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결함 있는 아이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비판에 대한 도피로 이해되었다. 그리하여 영아살인죄는 18세기 형법개정운동의 중요쟁점이 되었다. 1783년에 예나 구법원(Amtsgericht)은 영아살해녀 요한나 뢰(Johanna Hohn)을 칼로 처죽이는 사형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괴테는 동료 2인과 함께 승낙하는 의견서를 내었다.<sup>115)</sup> 그러나 다른 영아살해녀는 괴테와 자문회의(Consilium)의 제안에 따라 바이마르에서는 사면되었다.<sup>116)</sup>

괴테는 형벌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점점 엄격해질 수 있는 혈건한 법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형벌은 처음부터 시민사회로부터 특수화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개정되고 단호해지고 단축되거나 연장된다.<sup>117)</sup>

113) 법에서의 Gnade에 관하여는 라드브루흐/최종고 역, 赦免, **법철학**, 삼영사, 2000, 233-236면.

114) 자세히는 Rebekka Habermas, *Das Frankfurter Gretchen: Der Prozeß gegen die Kindsmörderin Susanna Margaretha Brandt*, München, 1999.

115) Goethe, *Amtliche Schriften*, 1:1, 246ff.

116) 한국에서 영아살해는 서양보다도, 일반살인보다도 훨씬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 그리스도교윤리와 유교윤리가 다르다는 정신적 배경과 1953년 한국 형법이 동란 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외국군인에 의한 강간으로 생긴 혼혈영아에 대한 수치심에서 행하는 영아 살해를 일일이 엄벌할 수 없었던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고 지적된다.

117) Goethe, *Wilhelm Meisters Wanderjahre*, 3. Buch, 11. Kap. *Gedenkausgabe*, Bd. 8, S. 437.

욕망(Lust)은 형벌의 두려움보다 더 강력하다.<sup>118)</sup>

보수(Belohnung)와 형벌은 그러나 항상 불가결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의사(意思)를 강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sup>119)</sup>

괴테는 슈트라스부르그대학 박사 테제에서부터 형벌과 사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sup>120)</sup> “사형은 폐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그의 존경의 대상인 정치가 뢰저(Justus Moser)가 『애국적 환상』(*Patriotische Phantasien*)에서 주장한 사형 존치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국가장관으로서 괴테는 사형의 존치를 위하(威嚇, Abschreckung)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sup>121)</sup> 그러나 괴테는 옥중의 그레첸(Gretchen)을 통하여 “교수(絞首)하는 자여, 누가 너에게 나를 교수할 권한을 주었는가?”라고 근원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sup>122)</sup>

라드브루흐는 『법철학』의 형법에 관한 장(제22장)에서 괴테의 다음 말을 못토로 인용하고 있다.

별하든지 사(赦)하든지  
인간은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  
(Soll er strafen oder schonen,  
Muß er Menschen menschlich sehen)<sup>123)</sup>

118) Goethe, In das Stambuch von J. M. Brack, Frankfurt a. M. 29. 2. 1769, *Der junge Goethe*, 1963-74, S. 291.

119) Goethe, *Frankfurter Gelehrte Anzeigen* zu A. v. Joch über Belohnung und Strafen nach türkischen Gesetzen, 1772, WA Bd. 1, S. 266.

120) 자세한 것은 Heinz Müller-Dietz, Goethe und Todesstrafe, Klaus Lüderssen(Hrsg.), *Die wahre Liberalität ist Anerkennung: Goethe und die Jurisprudenz*, Baden-Baden, 1999, SS. 15042.

121) Alfred Wieruszowski, Goethe und die Todesstrafe, *Juristische Wochenschrift*, 1932, SS. 842-845.

122) 라드브루흐/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1998(년판), 2227면.

123) Goethe, Der Gott und die Bajadere, V. 7, in: FA Bd. 1, S. 692.

## XII. 국제법(Völkerrecht)

괴테가 국가의 이익을 법의 기초로 보면서 “각 민족의 필요가 아니라 전승이 민족들의 법을 기초 놓는다”(슈트라스부르크 테제 47번)고 봄으로써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거부하였다. 당시의 국제법의 실체가 어떤 것이었느냐에 대해 설명이 되어야겠지만, 헤겔(Hegel)도 국제법을 ‘외부적 국가법’(äußeres Staatsrecht)으로 밖에 보지 아니하였고, 고타인(Goethein), 솔로서 등도 그러하였다. 라드브루흐는 괴테의 「법에 대한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평가」를 주목했다.<sup>124)</sup>

괴테가 얼마나 독일적이며 얼마나 유럽적이며 얼마나 코스모폴리탄적이었느냐는 또 하나의 흥미있는 연구주제이다. 분명했던 것은 그가 오늘날 동서독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이 된 현재의 독일에 국한된 국가관념에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에게 ‘비독일적’(undeutsch)이라는 렛텔은 수없이 붙여졌다(가장 독일을 대변함에도).<sup>125)</sup> 괴테의 문학과 사상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한정된 독일이라는 테두리에 갇혀져 있지 않다. 그는 인류의 보편적 이상을 추구하였다. “나의 지도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없다”고 하였듯이, 그의 이데올로기적 세계문학관이 잘 보인다.<sup>126)</sup>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독일이라고? 그렇지만 그게 어디 있나?  
 나는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학문이 시작되는 곳에는 정치적인 것이 종식된다.  
 (Deutschland? aber wo liegt es?  
 Ich weiß das Land nicht zu finden.  
 Wo das gelehrte beginnt, hört das politische auf.)<sup>127)</sup>

124) G. Radbruch, Goethe und das Recht(Zweites Manuskript), S. 7; B. Kastner, *ibid.*, S. 382에 수록.

125) 한 예로 M. Heidegger는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의 관점에서 괴테의 세계주의를 비판하였다. 자세히는 Hans-J. Weitz(hrsg.), *Goethe über die Deutschen*, Insel-Taschenbuch, 1978; Wolfgang Leppmann, *Goethe und die Deutschen*, München, 1998.

126) 김종대, 괴테의 자아인식과 세계시민성, *괴테연구* 6집, 1994, 7-23면.

127) *Goethe, Werke*, Bd. I, Weimarer Ausgabe, Nachdruck München, 1987, S. 218.

그는 정치적 의미의 독일을 넘어서 학자적, 정신적으로 세계성을 추구하였다 할 것이다. 괴테는 프랑스혁명을 경험했고, 유럽에서의 1813년부터 강화된 유럽의 민족사상들의 발현을 경험하였다. 그의 세계시민(Weltbürgertum)에 관한 사상은 근본적으로 인간성(Humanität)과 계몽사상(Aufklärung)에 기초하였다.<sup>128)</sup> 그가 살아있는 동안 독일은 군소 국가들로 분할되어 있었지만 그의 사후에 독일은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오늘날 실현되어 유럽통합과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괴테의 체험과 사색을 바탕으로 한 세계정신과 세계시민성이 세계문학으로 이어졌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관용(Toleranz)의 정신이 국가간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sup>129)</sup> 괴테는 세계질서와 세계사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나는 평화의 아들이다. 언제나 평화를 희망하고, 한 때는 나에게서 폐쇄시켰던 평화를 전 세계에 퍼지게 하고 싶다.<sup>130)</sup>

나는 그러므로 기꺼이 낯선 민족에게 가까이 하고싶고 각지에서 그의 편이 되도록 권하고 싶다... 실로 세계문학의 시대가 도래하였다.<sup>131)</sup>

인간들이 모든 힘, 마음과 정신, 이성과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을지는 지금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수학자들은 마치 변호사처럼 신(神)과 비슷하게 이 보편적 윤리적 세계동맹(Weltbund)을 하나의 의미있는 국가의 시민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sup>132)</sup>

도덕(Moral)은 우리 인격적 요구와 저 보이지 않은 정신적 제국의 법률들 사이에 존재하는 영원한 평화시도이다. 도덕은 지난 세기 말 무렵 느슨하고 노예적으로 되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오직 행복설(Glückseligkeitstheorie)의 흔들리는 계산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조야성(粗野性, Roheit)의 특징은 단지 자신들의

128) Helmut Koopmann, Art. Weltbürgertum, in: *Goethe-Handbuch* 412, 1998, SS. 1133-1134.

129) 김종대, 괴테의 세계문학과 그 현대적 의미, *문학예술* 1996년 6월호, 75면.

130) Goethe, Brief an Herder vom 12. 10. 1787, WA I/32, S. 114.

131) Goethe, Gespräch mit Eckermann am 31. 1. 1827, *Gedenkausgabe*, Bd. 24, S. 229.

132)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S. 99.

법률에 따라서만 살고 다른 영역에 함부로 침범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치름과 자의(恣意)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연합(Staatsverein)이 결성된다. 그리고 모든 법과 실정법률들은 다시 개인의 자력구제(Selbsthilfe)를 서로 방지하기 위한 영원한 시도로 된다.<sup>133)</sup>

자신의 힘을 알고 도량(度量, Maß)과 정의(Gerechtigkeit) 혹은 분별(Gescheitigkeit)을 이용하는 현명한 사람들만이 세계지구 속에서 광범하게 활동할 수 있다.<sup>134)</sup>

모든 법률과 윤리규칙은 하나에로 귀착되나니 즉 진리(Wahrheit)이다. 개별성의 과오 같은 것이 각자에게 도덕적 세계질서를 불러온다. 그 위에서 각자는 스스로 완결되고 스스로 벌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이 개별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곳, 그곳에서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Nemesis)는 조만간 적절한 외부적 형벌을 부과한다.<sup>135)</sup>

괴테는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선구적으로 세계적이었다. 라드브루흐는 괴테의 표현, “애국적 예술이라든가 애국적 학문이라든가 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sup>136)</sup>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민족은 그것이 국민적 특성을 추구하는 것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보편 타당한 과제에 망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국민이 된다. 의식적인 ‘향토예술’(Heimatkunst)이라든가 ‘조국문학’(Vaterlandsdichtung)같은 것은 예술적으로는 항상 2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인류라는 위대한 대상을 찾아서 노력하는 예술은 동시에 불가피하게 국민적이다. 독일인의 노력의 과제로서의 독일적 진리라든가, 독일적 신이라든가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한 독일인이 사물 그 자체를 위하여 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독일적인 것이다. 인격과 마찬가지로 국민은 역사가 뒤따라 적용하는 역사적 범주이지 문화적 행동의

133) Goethe, Gespräch mit F. V. Müller am 27. 4. 1818, *Gedenkausgabe*, Bd. 23, S. 32f.

134)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aus Wilhelm Meisters Wanderjahre, *Gedenkausgabe*, Bd. 7, S. 559.

135) Goethe, Gespräch mit F. v. Müller am 28. 3. 1819, *Gedenkausgabe*, Bd. 23, S. 49.

136)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Nr. 690; Cassirer, *Goethe und die geschichtliche Welt*, 1939, S. 8에서도 인용.

이상은 아니다.<sup>137)</sup>

여기에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처음부터 교조적 이데올로기로 전제하지 아니하고, 세계성과 보편성을 통하여서 민족적인 것도 완성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 XIII. 보다 높은 단계의 법학(höhere Stufe der Jurisprudenz)

자의였는지 교수들에게 보이려고 그랬는지 슈트라스부르크 테제에서 괴테는 “법공부는 월등 일등석에 서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누누이 말한대로 괴테는 직업적 법률가도 법학자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기에 어쩌면 그는 법과 법학에 대하여 더욱 자유롭고 근원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관조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파우스트」에는 법학 즉 ‘법률놀이’(Juristerei)을 공부한 파우스트의 입을 통해 ‘학자의 비극’(Gelehrtentragödie)을 고발하고 있다. 법학을 이미 지나간 법규범을 전통주의적으로 지켜나가는 시너로 보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성(Vernunft)은 거짓된 질서를 유지해나가는 불합리(Unsinn)로 보았다. 이것이 당시의 독일 법학의 지리멸렬함에 대한 비판인지 아니면 법학 자체의 근본적 성격에 대한 비판인지에 대하여는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괴테가 법학자가 되기를 권유받았지만 거부한 사실도 지금 보면 상징적으로 보인다. 그는 1825년 11월 24일 예나 대학에 보낸 감사 편지에서 젊은 시절에 법학계가 ‘오늘날과 같았으면 법학계에 매우 큰 열심으로 헌신했을 것’(mit größten Eifer gewidmet haben)이라고 고백하였다. 이때 그가 머리에 둔 것은 다분히 사비니(Friedrich Karl von Savigny, 1779-861)의 역사법학과(Historische Rechtsschule)였다.<sup>138)</sup> 괴테는 그만큼 역사법학에 호감을 가졌던 것이다.<sup>139)</sup>

137) 라트브루흐/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2000, 93면.

138) Wolfgang Klein, Art. Juristische Tätigkeit, in: *Goethe-Handbuch*, Bd. 411, Stuttgart/Weimar, 1998, SS. 591-594. 사비니에 관하여는 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2000(년판), 187-189면; 최종고, K. F. 사비니, **위대한 법사상가들 (I)**, 학연사, 1984; 이은영, 사비니의 법사상, **한독법학** 1집, 1979.

139) Dieter Norr, Geist und Buchstabe: Ein Goethe- Zitat bei Savigny, *Zeitschrift fü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RA, Bd. 100, 1983, S. 20-45; Dieter Norr, Savigny liest Goethe, in: *Die wahre Liberalität ist Anerkennung: Goethe und die*

괴테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오솔길이 숨겨진 비밀들은 밝혀서도 안 되고 밝힐 수도 없지만 거기엔 지나가는 나그네마다 걸려 비틀거리게 되는 돌부리들이 있다. 시인은 그러나 그 자리를 가리켜 보인다.”<sup>140)</sup> 이러한 원숙한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볼 때 그는 알량한 합리성에만 의존하는 법해석학(Rechtsdogmatik)에 갑갑함을 느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파우스트」에서 의학, 법학, 철학, 신학의 4분야를 모두 공부했지만, “세계를 가장 깊은 곳에서 끌고 가는 것”(was die Welt im Innersten zusammenhält)<sup>141)</sup>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추구가 마술(Magie), 연금술(Alchemie) 혹은 지령(地令, Erdgeist) 등으로 표현되었지만 결국 학문의 새로운 종합화, 학제성(Interdisciplinariät)을 시사해주는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괴테는 말하기를, “학문은 삶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가 한참 동안 우회한 다음 원래의 자리로 되 돌아온다”<sup>142)</sup>고 한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성숙한 학문, 그보다 높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모습을 우리는 괴테와 함께 그려보게 된다.

라트브루흐도 괴테의 사상을 이어받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형법의 발전이 장래 형법을 뛰어 넘어 나아가, 그리하여 형법의 개정이 하나의 보다 높은 형법(ein besseres Strafrecht)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보다 좋은 것(das besser als Strafrecht), 형법보다 더 현명하고 보다 인간적인 하나의 개선법(Besserungsrecht) 및 방위법(Bewahrungsrecht)에 이르는 것이 구상되어야 한다.”<sup>143)</sup> 법철학은 그런 면에서 보다 높은 지평을 이상으로 삼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모순을 라트브루흐는 괴테에 기초하여 보여주고 있다.

## 결 론

이상에서 괴테의 면모를 법학의 관점에서 몇 측면으로 분석 조명해 보았다.

괴테의 법사상의 기본특징은 18세기의 경직된 실정법질서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자연법적 요청을 강하게 의식하면서도 단순한 자연법적 교조적 이론을 주장

*Jurisprudenz, Nomos*, 1999, SS. 149-175.

140) Goethe, Wilhelm Meiters Wanderjahre, *Goethe Werke*, HA. 1981.

141) Goethe, *Faust I*, verse 382f.

142)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Insel-Taschenbuch, 1976.

143) 라트브루흐/최종고 역, **법철학**, 1975, 226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민족정신(Volksgeist) 내지 민중성(Volkheit) 나아가 세계 시민성(Weltbürgertum) 위에 기초한 역사법사상(historisches Rechtsdenken)을 강하게 견지하였다는 점이다.<sup>144)</sup> 이 두 방향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느냐는 간단치 않은 문제이지만, 괴테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랬으면 족했지 스스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괴테의 ‘모순성’은 법사상에서도 보인다. 특히 1814년 티보(Anton Thibaut)와 사비니 사이에 전개된 법전논쟁(Kodifikationsstreit)에 대해서 괴테가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더욱 연구해 볼 과제이다.<sup>145)</sup>

그러면서도 괴테는 자연과학적 정신을 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식물 변형론과 광학론, 색채론 등에서 원용하는 원초식물, 원초현상 등의 관념 내지 시각으로 Gesetz를 인간의 실정법률인 Gesetz를 자연과학적 법칙과도 상통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시아인들의 天人相與와 天人感應의 사상과도 비슷하게 여겨지고,<sup>146)</sup> 오늘날 환경 윤리 내지 생태의 법철학(ökologische Rechtsphilosophie)과도 관련하여 새롭게 조명해볼 수 있는 측면이라 생각된다.<sup>147)</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괴테의 불멸의 가치는 그의 작품들을 통하여, 특히 원숙한 사상을 담은 「파우스트」를 통하여 괴테 자신이 성숙시킨 법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는 방법론에서부터 법이념 내지 법효력 등에 깊은 관

144) 역사법학과(Historische Rechtsschule)의 창시자인 K. F. von Savigny에 대하여 그의 민족정신(Volksgeist)의 관념 속에는 자연법적 사고가 극복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음은 법사상사에서 알려진 사실이다. 자세한 것은 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2000(년판), 187-189면.

145) A. Thibaut는 1802년에 예나대학에 있을 때 괴테를 알게 되었는데, 하이델베르크대학으로 옮겨 특히 음악을 통해 많은 예술인과 교류하였다. 괴테가 아들 아우구스트를 그에게 소개장을 써서 공부하러 가게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A. Thibaut에 관하여는 Gerd Kleinheyer/Jan Schröder(Hrsg.), *Deutsche und Europäische Juristen aus neun Jahrhunderten*, 4. Aufl., Heidelberg, 1996, SS. 420-424. 그리고 E. Wohlhaupter, A. J. Thibaut und Robert Schumann, in: *Dichterjuristen*, I, 1953, SS. 120-166; J. Stern(Hrg.), *Thibaut und Savigny*, 1. Aufl., 1914, 3. Aufl. 1973.

146) 자세한 것은 Chongko Choi, *Foundation of East Asian Jurisprudence*, Nanjing, 2000; 동아시아의 朱子學的 自然法論의 특징은 자연과 사회를 理로 一元的으로 설명하는 데에 있다.

147) Hans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ivilisation*, Frankfurt 1984, 이진우 역, **책임의 원칙: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994; Arthur Kaufmann, *Rechtsphilosophie*, München 1996.

심을 갖고 나아가 ‘보다 높은 단계의 법과 법학’을 머리 속에 그리고 있었다. 예수도 법률가들을 향하여 예언자들의 무덤을 파는 족속이라고 비판하였지만,<sup>148)</sup> 어느 시대에나 경직되고 자기이익만 챙기는 법률가와 법학자들에게 항상 새롭게 자기 갱신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언제나 참신한 경고요 교훈이다. 이러한 이상을 향하여 부단히 갱신하고 모색해나가는 데에 괴테의 법사상 내지 법정신은 항상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

148) 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2000(년판), 16-19면; 최종고, 예수와 법, **법과 윤리**, 경세원, 2000(년판), 290-293면.

〈Resumé〉

## Rechtsgedanken von J. W. von Goethe

—Goethe-Rezeption in der Radbruchschen Rechtsphilosophie—

Chongko Choi\*

Dieser Aufsatz versucht, Goethesche Rechtsgedanken von verschiedenen Gesichtspunkten zu analysieren, auf dem Basis der neuerlichen Forschungen in Deutschland, wie z. B. Alfons Pausch/Jutta Pausch, *Goethes Juristenlaufbahn*(1996): Klaus Lüderssen(hrsg.), *Die wahre Liberalität ist Anerkennung: Goethe und die Jurisprudenz*(1999) und Berthold Kastner, *Goethe in Leben und Werk Gustav Radbruchs*(1999).

Dieser Aufsatz besteht aus dreizehn Themenkreisen: 1) Methodentrialismus, 2) Natur der Sache, 3) Naturrecht, 4) Rechtsidee und ihre Antinomien 5) Gesetz 6) das Rechte 7) Pflicht 8) Jurist 9) Staat 10) Besitz und Eigentum 11) Strafe 12) Völkerricht 13) höhere Stufe der Jurisprudenz. Nach dieser Ordnung kann der Inhalt dieses Aufsatzes wie folgendes zusammengefaßt werden.

### 1. Methodentrialismus

Methodologisch strebt G. Radbruch nach “Methodentrialismus”, nicht nach “Methodenmonismus” oder “Methodendualismus”. Diese Entspannung zwischen *Sein* und *Sollen* kommt vom Gedanken des “Sich-Ins-Rechte-Denkens”, das schon von Goethe ausgesprochen wurde.

### 2. Natur der Sache

Der Begriff der “Natur der Sache” spielt eine große Rolle in der Rechts-

---

\* Professor der Rechte, Staatliche Universität Seoul

philosophie von G. Radbruch, W. Maihofer und A. Kaufmann. Goethe sprach von der Natur der Sache als ein Ausdrucksform einer Selbstverständlichkeit.

### 3. Naturrecht

Goethes Straßburger *Positiones Juris* erwähnt das Naturrecht am Anfang und am Ende. Das Recht, das mit uns geboren ist, ist im *Faust* ist als Naturrecht verstanden. Goethe stand immer in der naturrechtlichen Denkweise, in dem er Urphänomen und Urpflanze in seiner Morphologie bestrebt.

### 4. Rechtsidee und ihre Antinomien

Goethe sagt: Wer sich von der Idee scheut, hat auch zuletzt den Begriff mehr nicht. Auf dem Basis dieses Gedankens, definiert Radbruch den Rechtsbegriff als einen Kulturbegriff: d. h. das Recht sei die Wirklichkeit, die den Sinn hat, der Rechsidee zu dienen. Radbruch formuliert auch den Trialismus der Rechsidee: Gerechtigkeit, Zwecksmäßigkeit und Rechtssicherheit. Goethe sagt: Ich will lieber eine Ungerechtigkeit begehen, als Unordnung ertragen.

### 5. Gesetz

Der Begriff des Gesetzes ist mehrdeutig. Nach J. Eupenbeck ist Goethesche Gesetz benutzt als 1) zivil-, staatsrechtliches Gesetz, 2) naturwissenschaftliches, physikales Gesetz, 3) Entwicklungsgesetz in der Morphologie, 4) Notwendigkeit, Ewigkeit und Gesetzlichkeit im Zusammenhang mit B. Spinoza.

### 6. das Rechte

Das Rechte bei Goethe ist sowohl als objektives Recht auch als subjektives Recht gebraucht.

## 7. Pflicht

Goethe scheint, als ob er mehr die Wichtigkeit des menschlichen Pflichten als subjektives Recht betont hätte. Von diesem Gesichtspunkt sollte Goethesche Moral- und Tugendlehre mit Kantscher Ethik verglichen werden.

## 8. Jurist

Während meisten Schriftsteller die Juristen kritisch oder satirisch erwähnen, sieht Goethe die Juristen manchmal positiv und sympathisch.

## 9. Staat

Goethe war kein Demokrat, sondern ein Aristokrat im guten Sinne. Er liebte die Volkheit. Bei ihm lautet *salus rei publicae suprema lex esto*. Als Politiker und Staatsverwalter neigte Goethe sich zur Stabilität des Staates vor allem.

## 10. Besitz und Eigentum

Nach Radbruch, hat die individualistische Eigentumstheorie oder die Persönlichkeitstheorie des Eigentums ihre edelste Gestalt durch Goethe erhalten. Goethe sagt:

Epimetheus: Wie viel ist denn dein?

Prometheus: Der Kreis, den meine Wirksamkeit erfüllt, nicht drunter und nichts drüber.

Faust: Was du ererbt von deinen Vätern hast,

Erwirb es, um es zu besitzen.

Was man nicht nützt, ist eine schwere Last.

Nur was der Augenblick erschafft, das kann er nützen.

## 11. Strafe

Goethe bejaht die Todesstrafe. Doch sagt er, soll er strafen oder schonen, muß er Menschen menschlich sehen. Das Buch *Faust* lehrt, es irr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Ein guter Mensch in seinen dunklen Drange, ist des rechten

Weges wohl bewußt.

## 12. Völkerrecht

Goethe betonte Weltliteratur, und wurde manchmal als undeutsch kritisiert. Er stand auf dem Basis der Humanität und Aufklärung. In seiner Straßburger These, sagt Goethe: Nicht Herkommen, sondern Nutzen eines jeden Volkes hat das Recht der Völker gegründet(Nr. 47).

## 13. Höhere Stufe der Jurisprudenz

Obwohl Goethe das Juristerei durch den Mephistopheles Mund gespottet hat, hoffte er eine höhere Stufe der Jusrisprudenz(Hans Liermann, Goethe und die Jurisprudenz, *Juristische Rundschau*, 1949).

Radbruch auch führt diesen Gedanken fort; indem er sagt: Es möchte vielmehr gerade umgekehrt so liegen, daß die Entwicklung des Strafrechts über das Strafrecht einstmals hinwegschreiten und die Verbesserung des Strafrechts nicht in ein besseres Strafrecht ausmünden wird, sondern in ein Besserungs- und Bewahrungs recht, das *besser* als Strafrecht, das sowohl klüger wie menschlicher als das Strafrecht wäre.(*Rechtsphilosophie*, 8. Aufl. 1973, S. 265)

## Schluß

Zusammenschließend, wirken Goethesche Rechtsgedanken besonders durch Radbruch in der gegenwärtigen Rechtsphilosophie lebendig weiter. Nach der "Goethe-Renaissance" seit 1970er Jahrzehnte, erscheinen viele juristischen Fachforschungen über Goethe. Dieser Verfasser wünscht, solches neue akademische Interesse nach dem Koreanischen rechtwissenschaftlichen Kreis zu vermitteln und weiter zu diskutieren.